

의 안 번 호	1730	<b>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b> 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4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4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5. 13.(목)

### 2. 제안이유

- 외솔 최현배선생 서거 50주년 및 외솔기념관 개관 10주년(2020년)을 맞이하여 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문화유산 보전·계승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글사랑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드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한글도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 : 「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 
→ 「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」
- 나.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다.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추진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- 마. 위원회 기능(안 제6조)
- 바. 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  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
  - 위원 구성
    - 당연직 위원: 부구청장, 주민자치국장
    - 위촉직 위원: 구의원, 한글 관련 단체·교육계·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, 한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사. 위원 임기, 위원회 운영, 회의, 간사 등(안 제8조 ~ 안 제11조)

- 아. 공문서 등 작성, 공공기관 명칭 등(안 제12조 ~ 제13조)
- 자. 공공행사 광고물 등 한글 표시(안 제14조 ~ 제15조)
- 차.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(안 제16조)
- 카. 예산 지원, 한글날 기념행사 등(안 제17조 ~ 제18조)
- 타. 교육, 포상 등 (안 제19조 ~ 제20조)

#### 4. 근거법규 :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,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우리 중구가 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, 한글도시로 나아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안 제15조 광고물 등에 한글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자칫 규제로 느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어렵다 판단되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법한 범위에서 권장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며
- 「국어기본법」에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
-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큰 거 법 규

## 국어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국어책임관의 지정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공문서의 작성)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,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국어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,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
2.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
3.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
4.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

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시·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.